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51호

의 안 명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의 결 일 2019. 12. 2.

주 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2월 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 지]

보다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제도 현황 ·· 2

Ⅲ. 문제점 ·· 7

1.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 근거 부재 ·· 7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사유의 획일적인 적용 ·········· 12

Ⅳ. 개선방안 ·· 17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 근거 신설 ························ 17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18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19

[붙임] 관련 법령 ··· 20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추진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법 제15조)

- 또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법 제14조)

※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선 적용

○ 그러나, 공익침해 행위를 자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책임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사례 발생**

-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을 면제받은 **공익신고자도 담합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제재처분

※ 부정당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취소**(최하위 등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이 제한

○ 이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19. 7. 31.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9. 8. 26.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 ~ '19. 11. 8.

Ⅱ. 제도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법 제2조)

- 6대 분야, 284개 대상 법률의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 제14조)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함(제2항)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3항)
- 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처분권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6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법 제5조)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

□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리니언시, 공정거래법)

○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 및 형사고발을 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 **(감면기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은 최초 증거 제공, 성실한 조사 협조, 담합행위 중단 여부 등에 따라 결정(시행령 제35조)

> ① 담합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자**
>
> - 조사개시 前 : 자진신고자, 조사개시 後 : 조사협조자
>
> ② 담합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한 조사협조**
>
> ③ 해당 담합행위의 **중단**
>
> ④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행위의 참여 또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⑤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감면정도)** 공정위 조사개시 전·후 여부,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등을 면제**(시행령 제35조)

<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정도 >

유형	1순위		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과징금	면제	면제	50% 감경	50% 감경
시정조치	면제	감경 또는 면제	감경 가능	감경 가능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제도 (국가계약법 등)

○ **(내용)**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1월~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기준) 제재기간은 1월~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로 별도로 규정

※ [붙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조

- (경감) 제재처분 기간의 가중 및 경감은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 제재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

※ 제재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은 제재**해야 함

○ **(근거)**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근거는 계약 당사자에 따라 별도 규정

<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근거 >

구분	근거	비고
국가기관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제31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세부기준 등은 국가계약법령 준용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세부기준 등은 지방계약법령 준용

○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사유는 「국가계약법」 등에 명시

< 「국가계약법」 상 입찰참가 제한사유(제27조 제1항) >

구분	입찰참가 제한사유
제1호	▪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당·부정 이행
제2호	**▪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
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
제4호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제5호	**▪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제한 요청**
제6호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한 요청
제7호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뇌물 제공
제8호	▪ 기타 입찰·계약 방해, 계약 미이행 및 방해 등

○ **(절차)** 자체 적발 또는 공정위 등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상 **기관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결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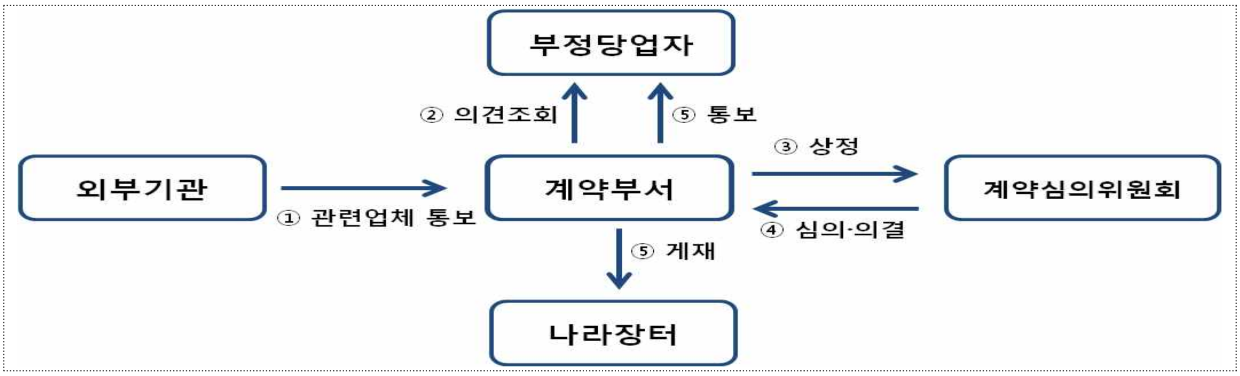

○ **(현황)** 최근 5년간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은 증가 추세

- 시설분야는 전년대비 105% 증가, 물품분야는 27.4% 증가

<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조달청, 예시)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물품·서비스 구매	196	232	326	420	525	1,699
시설공사	46	48	33	22	45	194
계	**242**	**280**	**369**	**442**	**570**	**1,893**

[자료 : 2017 조달연보]

- 담합입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전체의 약 13.7%를 차지

<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조달청, 예시)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약미체결	15	11	12	28	21	87
계약불이행	155	155	150	192	201	853
적격심사포기	9	37	50	68	89	253
뇌물제공	8	-	9	10	2	29
담합입찰	**34**	**55**	**91**	**40**	**39**	**259**
부정행사	3	1	-	5	-	9
허위서류제출	5	11	12	21	51	100
부정시공 등	13	6	24	66	104	213
기타	-	4	11	12	63	90
계	**242**	**280**	**359**	**442**	**570**	**1,893**

[자료 : 2017 조달연보]

□ 어린이집 평가 [영유아보육법]

○ **(내용)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해 운영되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평가제로 변경('19.6. 시행)

○ **(절차)** 평가대상 통보, 확인 및 점검, 현장 및 종합 평가 등 3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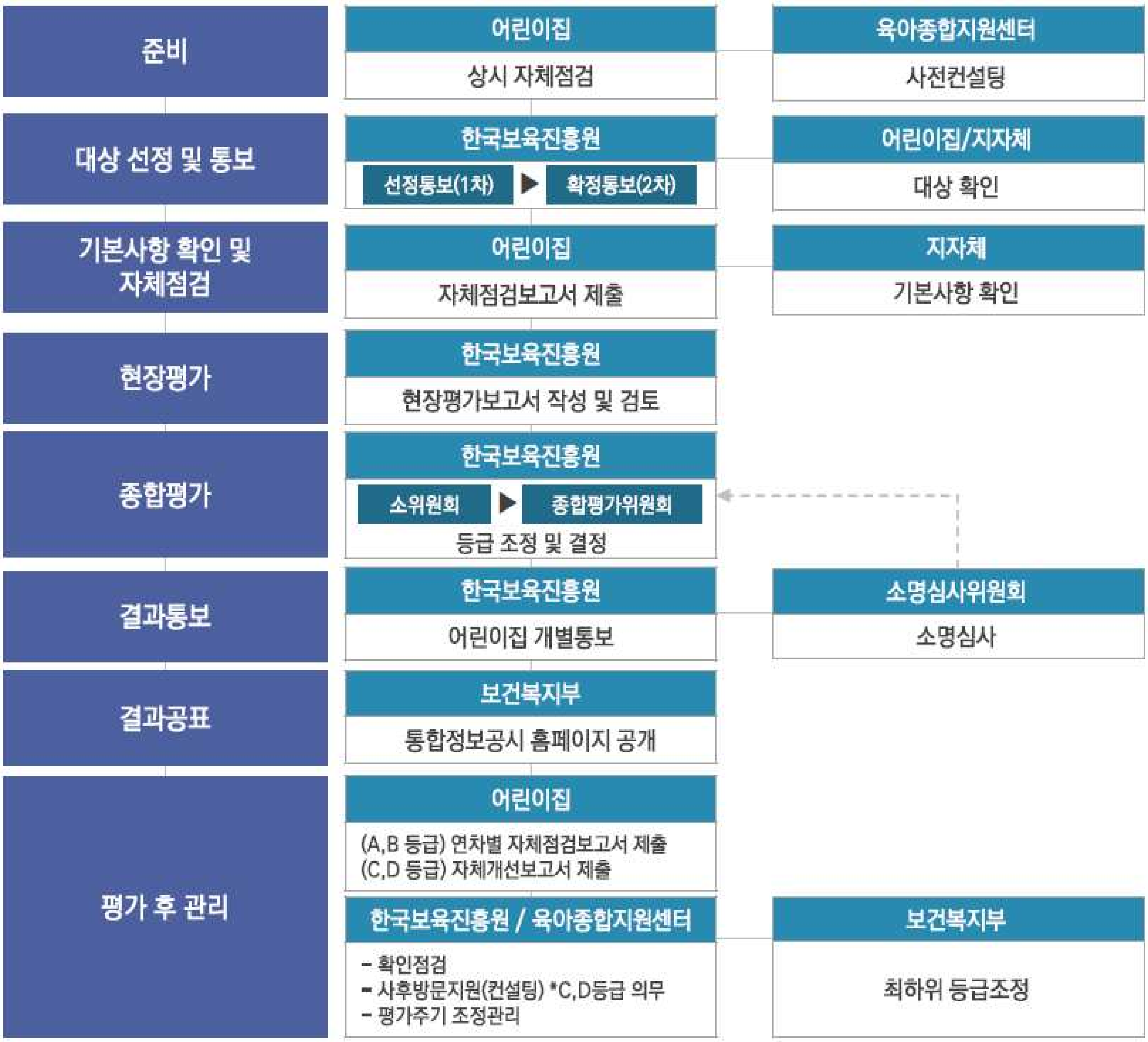

○ **(결과)** 총 4등급(A,B,C,D)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및 이력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평가 등급별로 행·재정적 지원)

※ 아동학대 등 법 위반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Ⅲ. 문제점

1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제처분 면제 근거 부재

□ 담합행위 자진신고의 공익적 효과 미고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므로 **담합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공익기여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면제**

※ 공정위 조사개시 前 최초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

▪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기준 등)

1.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나.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자진신고에 의해 고질적 담합 관행이 시정될 경우 **입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공익적 효과**가 큼

※ 담합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특성

▪ A업체의 담합행위 신고로 인하여 7개 업체에 과징금 18억원이 부과되었고, 담합행위를 통해 평균 95%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던 업계의 담합 관행이 시정되어 담합 파기 후 입찰 건 부터는 **평균 투찰율이 52%로 대폭 하락**(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사례, ’17.2)

▪ B업체의 담합행위 신고로 인하여 ◎◎◎제품 입찰 구매 낙찰률이 평균 98%에서 84%로 떨어져 **연간 18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사례, ’17.12)

□ **공익신고자도 동일하게 부정당업자로 제재**

○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면제 받은 공익신고자도 담합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제재**처분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1/2범위에서 감경할 수는 있지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

※ **공익신고자**가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 제한은 불가피**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입찰담합**)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 부정당업자는 일정기간(1월~2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향후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 등 **공익신고에 따른 피해 발생**

- 특히, 전체 매출액 중 **관급공사 등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입찰 참가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

▪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신고한 사실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불이익을 받게되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국가계약법으로 불리한 처

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함

우리 회사는 특성상 매출의 80~90%를 정부, 공공기관의 입찰로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수주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으로 생산 장비 가동 마비, 금융권 대출 회수, 6개월 이내 부도 및 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어 절박한 상황

담합행위 신고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검찰에 직접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공익챔해행위를 시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전락하게 됨(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17.2)

▪ 공익신고자로서 포상을 받기는커녕 제보자로 낙인찍혀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어야 할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반함(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17.12)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입찰참가 시 감점, 입찰보증금 차등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 >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낙찰심사 시 0.5~2.0점 감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Ⅲ. 신인도 평가>

타.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납품 중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0조 제4항

제50조(단가계약의 관리) ④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조달청장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관국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안 단가계약의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부담이 2~5배까지 차등적으로 증가**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48조의2 등

구분	보증금율 (당초)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른 보증금율(차등)			
		6월 미만	6월~1년	1~2년	2년 이상
입찰보증금	5%	10%	15%	20%	25%
계약보증금	10%	15%	20%	25%	30%
하자보수보증금	5%	6%	7%	9%	10%

□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의 실효성 저해

○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담합 신고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최근 5년간 자진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건이 **전체 담합사건의 75.6%**

< 최근 5년간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사건 비중(단위: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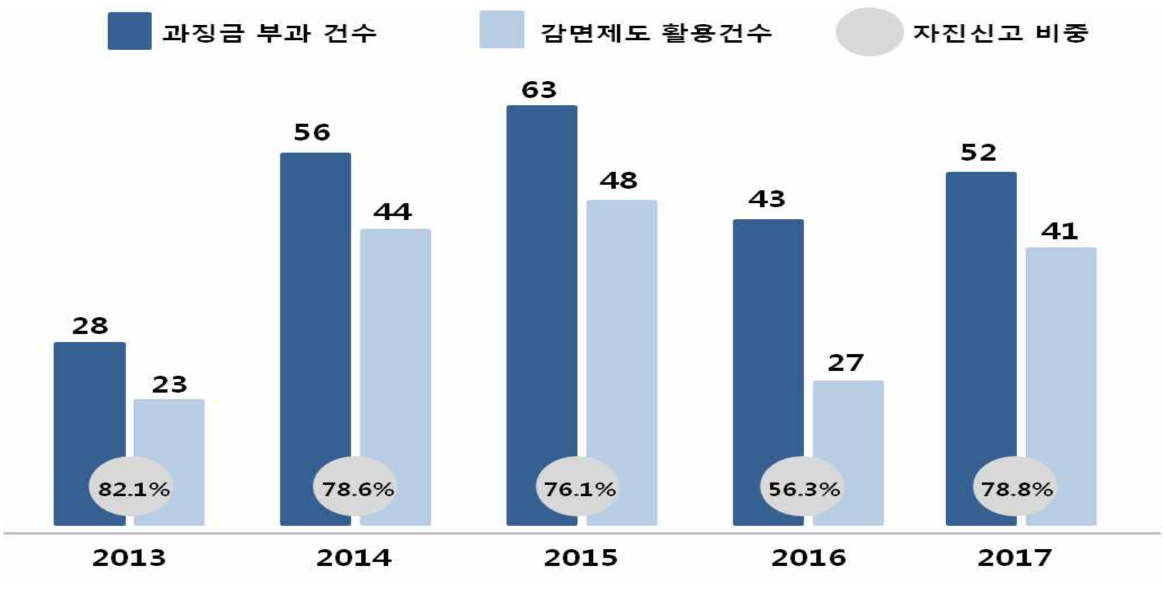

[자료 : 2018년 공정거래 백서 재구성]

- 입찰담합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 중 자진신고 또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즉 '리니언시'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국회입법조사처, '14.8월)
- 「국가계약법」 등에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믿고 자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신고를 유도하려는 「공정거래법」과 자진신고 기능을 억제하는 「국가계약법」 간에 결과적으로 모순과 충돌**을 빚고 있음(건설산업연구원, '13.11월)

○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제도의 실효성 저해** 우려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과 관련해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사유의 획일적인 적용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 어린이집 평가 시 아동학대 등의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 해당 사건 등이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분

※ 어린이집 평가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평가제 시행('19.6) 전에는 인증 취소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 등)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평가등급 조정 등은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이지만, 신고자가 설치·운영자일 경우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신고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

- 어린이집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조정(인증취소)되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공익신고에 따른 피해 심각**

▪ 본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CCTV를 통해 확인하여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모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

그럼에도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 취소 및 **월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의 지원 중단이 예정되어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17.10)

- 전임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자발적으로 공익신고하여 사건이 적발된 것인데, 전임 원장의 비위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인이 어린이집 인증 취소를 받아 너무나 억울함
  아무런 잘못이 없는 현재 원장인 본인이 어린이집 인증 취소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앞으로 누구도 공익신고를 하지 않을 것임(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17.8)

<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예시) >

- **공공형어린이집(우수 어린이집 선정, 운영비 지원) 선정 취소**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2 선정취소 사유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등급 및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미만
  * 재인증 결과 A등급 미만일 경우, '18년에 재인증 신청한 어린이집('19년 5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 적용)에 한해 재평가(B·C등급) 및 재참여(D등급) 신청 시, 최종 인증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 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인증 결과가 B·C·D일 경우 취소절차 진행)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90.00점 미만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00점 미만

- **조리원 인건비 등 지원 중단**

 -「2019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라.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된 시설 :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된 시설 : 종료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학부모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되어 보육 아동 모집 등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도 어려움 예상**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

□ 아동학대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위축 우려

○ 자발적인 공익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의 은폐 및 공익신고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

-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어린이집 원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평균 30.6%에 불과**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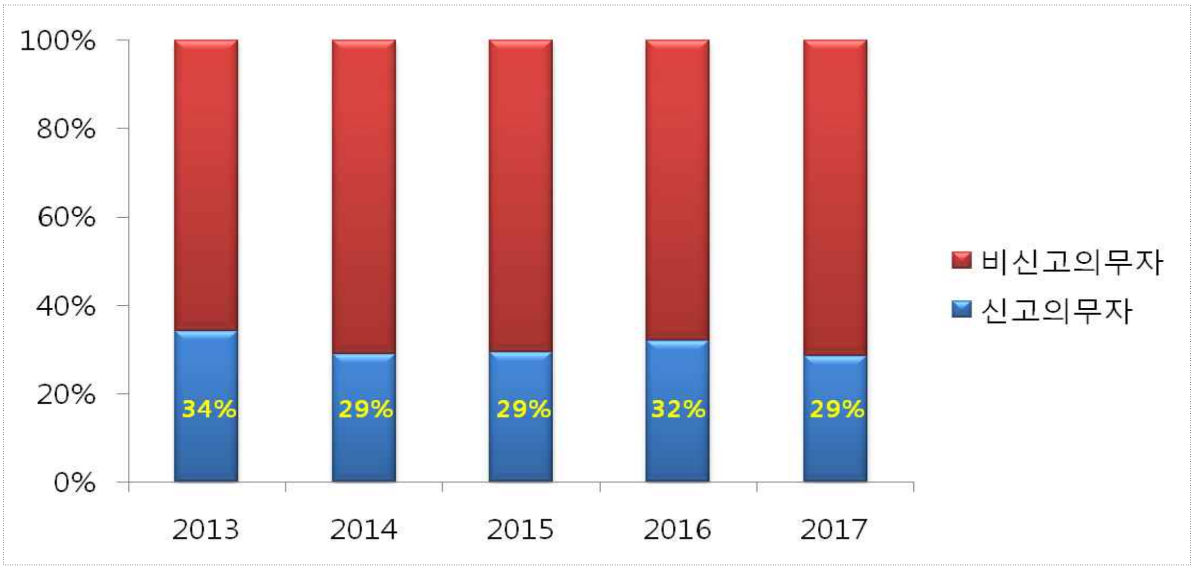

[자료 : 아동학대전문기관]

-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신고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클 경우 **자발적인 신고 유인이 없어질 가능성**

※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따른 불이익 비교(예시)

아동학대 미신고		아동학대 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처벌법」제63조	〈	▪ **월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 중단** * 위원회 책임감면 요청 사례('17.10월)

○ 「아동학대처벌법」등에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증취소)으로 조정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정간 모순**

-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5. 아동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종사자), 학교 교직원 등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 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참고> 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4.17.)

□ 사건의 쟁점

○ 청구인이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라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결요지(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

○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 청구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단서가 되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며,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로서의 보호가치가 높고,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 재결의 의미

○ 청구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Ⅳ. 개선방안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 근거 신설

○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을 면제 받은 신고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단, 면제 논의 대상은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1순위*)**에 한정

*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자

>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
>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
>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시 위법행위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공익신고 및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영유아보육법」제30조 개정 및「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등에 반영**

※ 참고 법령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18.12월)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Ⅳ. 조치사항 및 기한 등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구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 근거 신설	◦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을 면제 받은 신고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가계약법」및「국가계약법 시행령」등 개정 ☞「지방계약법」및「지방계약법 시행령」등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제30조 및「어린이집 평가 매뉴얼」개정	보건복지부

□ 조치기한 : 2020년 12월

붙임 **관련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2004. 12. 31., 2007. 8. 3., 2013. 7. 16.>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9.>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6. 3.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2., 2009. 5. 13., 2011. 12. 30., 2012. 6. 19., 2016. 9.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 6. 25.>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 6. 25.>
   라. 삭제 <2008. 6. 25.>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

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 2016. 9. 29.>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

④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2., 2011. 12. 30.>

[전문개정 2005. 3. 31.]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1997. 12. 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정본입니다.

2019. 12. 3.

국민권익위원회

ACRC